

<h1>보도자료</h1> <p>2019. 2. 12.</p>	 <h2>양형위원회</h2>	
	담당부서	운영지원단
	담당자	운영지원단장 이도행 판사 (☎ 3480-1924)

## 대법원 양형위원회

- 『명예훼손범죄,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,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』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

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9. 2. 11. 명예훼손범죄,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,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 청취

### ① 행사 개요

- 일시 : 2019. 2. 11. 14:00 ~ 18:00
- 장소 :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
- 주최 : 대법원 양형위원회(위원장 정성진)
- 사회 :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(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)
- 발표 : 손철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(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)
- 지정토론자
  - ▶ 명예훼손범죄 : 홍성수(숙명여대 법학과 교수), 최정민(변호사)
  - ▶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: 이기수(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), 정관영(변호사)
  - ▶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: 안성훈(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), 최재혁(변호사)

### ② 공청회 결과 요약(지정토론 요지)

## ■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

- ☞ 명예훼손범죄는 개별 피해자와 상황에 따라 **해악의 정도**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고, 특히 허위사실 공표가 **공인이거나 공적사안**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**(감경적) 양형요소에 반영**하자는 의견(**홍성수 교수**)
- ☞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사회의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허위사실이 교정된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(**홍성수 교수**)
- ☞ 범행수단 및 상대방과 관련하여, 전파가능성 및 표현의 범위, 크기, 반복성 등을 양형인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(**홍성수 교수**)
- ☞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**혐오표현**과 관련하여,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**성별, 장애, 종교, 나이, 출신 지역, 인종, 성적 지향 등의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한 경우에 이를 가중요소로 반영**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(**홍성수 교수**)
- ☞ 상관 명예훼손죄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양형인자보다는 소유형으로 추가하자는 의견(**최정민 변호사**)
- ☞ **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**하자는 의견(**최정민 변호사**)
- ☞ 인터넷에 글이 게시되어 **다수인이 조회하거나 유포된 경우 가중인자로 반영**하자는 의견(**최정민 변호사**)

## ■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

- ☞ 특별감경인자로 규정된 **‘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’와 ‘단순가담’의 적용범위를 제한할** 필요가 있다는 의견(**이기수 교수**)
- ☞ **‘처벌불원’을 일률적으로 감경요소로 규정한 것은 문제**가 있다는 의견(**이기수 교수**)
- ☞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인 ‘단순가담’과 ‘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’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(**이기수 교수**)
- ☞ 지금까지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의 양형이 다소 약했다는 지적과 이번에 설정된 양형기준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이 적정하다는 의견(**정관영 변호사**)
- ☞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의 유형을 **조직적 범행과 비조직적 범행으로 구분한 것이 타당**하다는 의견(**정관영 변호사**)

## 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

- ☞ 양형기준안이 일반적 범행과 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을 구분하여 유형 분류하고 그에 따른 형량범위를 설정한 것은 적정하다는 의견(안성훈 연구위원)
- ☞ 특별가중인자 중 ‘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’는 조직적 범행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유형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(안성훈 연구위원)
- ☞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다른 유형의 범죄도 양형 기준 설정대상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(최재혁 변호사)
- ☞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영업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을 조직적 범행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같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(최재혁 변호사)
- ☞ 생계형 범죄를 감경인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 범위도 너무 넓은 의견(최재혁 변호사)
- ☞ 현재 실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다소 높다는 의견(최재혁 변호사)

## 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검토 및 반영

-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, 자문위원 회의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,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 2019. 3. 25. 전체회의에서 명예훼손범죄,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,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

## ③ 향후 일정

- 2019. 3. : 자문위원 회의 개최
- 2019. 3. 25. 양형위원회 제93차 전체회의 ⇒ 명예훼손범죄,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,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최종의결 예정

# I.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## ① 양형기준 신규 설정의 취지

-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은 인터넷,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임

## 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

### 1.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 명예훼손	-6월	4월-1년	6월-1년6월
2	출판물등·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	-8월	6월-1년4월	8월-2년6월

### 2. 모욕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 모욕	-4월	2월-8월	4월-1년
2	상관모욕	-6월	4월-10월	6월-1년2월

## ③ 주요 특징

-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징역형 선고비율이 낮아 양형기준 설정의 요청이 실무상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는 반면,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요구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음
- 인터넷,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

- 2017. 7.부터 군사법원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고, 균형법상 범죄(순정군사범죄)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함. ⇨ 이번에 최초로 군사범죄(균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)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
-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고,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명예훼손에 비하여 가중처벌(최대 징역 3년9월까지 권고)하고, 균형법상 상관명예훼손과 상관모욕도 가중처벌
- 만취상태에 빠지면 명예훼손 범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양형기준상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함
- 고의로 만취상태를 야기한 후 명예훼손 범행을 한 경우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가중인자로 반영
- ◆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
  - 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②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, ③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, ④ 균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, ⑥ 동종누범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  - 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, ②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, ③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, ④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, ⑤ 처벌불원 등 :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- ◆ 모욕
  - 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②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, ③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,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, ⑤ 동종누범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  - 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, ②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, ③ 처벌불원 등 :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#### ④ 양형기준안 적용사례

- ◆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

- 사례 :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9차에 걸쳐 게시한 사안.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의 실명, 집주소,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그대로 노출됨
- 종전 판결 :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
- 양형기준안을 적용
  - 유형 : 대유형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> 소유형2 출판물 등·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
  - 특별양형인자 : ‘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’, ‘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’ 등 특별가중인자 2개 존재
  - 권고형량범위 : 징역 8월 ~ 3년 9월(특별가중영역)
-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하여 보다 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양형위원회의 규범적 판단이 반영 ⇨ 양형기준안에 따를 경우 기존의 양형실무보다 더 엄정한 형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

#### ◆ 모욕

- 사례 : 폭행사건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한 사안.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3회 있었고,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.
- 종전 판결 :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
- 양형기준안을 적용
  - 유형 : 대유형2 모욕 > 소유형1 일반 모욕
  - 특별양형인자 : 없음
  - 일반양형인자 : ‘진지한 반성’ 이라는 일반감경인자가 1개 존재
  - 권고형량범위 : 징역 2월 ~ 8월(기본영역)
- 기존 양형실무를 포섭하는 것으로서 사안에 따라서는 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

## II.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### ① 양형기준 신규 설정의 취지

-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은 불법 다단계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절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한 것임

### 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비조직적 범행	- 8월	4월 - 1년	8월 - 2년
2	조직적 범행	- 10월	6월 - 1년 6월	1년 - 4년

### ③ 주요 특징

- 비조직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을 구분하여 후자를 가중처벌
- 조직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으로 설정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(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됨)
- ① 조직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, ②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, ③ 동종 누범,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- 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, ② 단순가담, ③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등 :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### ④ 양형기준안 적용사례

- 사례 : 피고인이 다수의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인·허가를 받지 않고 약 3,000명

의 투자자들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유사수신. 피고인은 주범이었고, 수신액 중 상당 부분이 수당 등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, 사기죄 등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음

- 종전 판결 : 유사수신행위범위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
  
- 양형기준안을 적용
  - 유형 : 소유형2 조직적 범행
  - 특별가중인자 : ‘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’ 및 ‘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’
  - 특별감경인자 : ‘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’
  - 권고형량범위 : 징역 1년 ~ 4년(가중영역)
- 조직적 범행에 대하여 보다 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양형위원회의 규범적 판단이 반영 ⇨ 양형기준안에 따를 경우 조직적 범행에 있어서 기존의 양형실무보다 더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



### III.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

#### ① 양형기준 신규 설정의 취지

-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장매매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 것임

#### 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적 범행	- 6월	4월 - 10월	6월 - 1년 2월
2	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	- 8월	6월 - 1년 6월	10월 - 2년6월

#### ③ 주요 특징

- 일반적 범행과 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을 구분하여 후자를 가중처벌
- 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6월로 설정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권고(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됨)
- ① 조직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, ②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, ③ 동종 누범,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: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- 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, ② 단순가담, ③ 자발적 거래정지·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등 :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#### 4 양형기준안 적용사례

- 사례 : 피고인이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개설한 다음, 카드 1개당 매월 150만원을 받고 109개의 현금카드를 보이스포싱 직원에게 대여
- 종전 판결 :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
- 양형기준안을 적용
  - 유형 : 소유형2 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
  - 특별가중인자 : ‘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’
  - 권고형량범위 : 징역 10월 ~ 징역 2년6월(가중영역)
- 기존 양형실무를 포섭하면서도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적절한 형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